

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 규정

제정 2017. 1. 1.

전문

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는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임상 연구의 계획, 인력교육, 수행 및 결과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설계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임상연구, 관련 자료 및 사례의 수집 및 정리와 전문적 연구활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Institute of Safe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Korean Medicine, 약칭 ISE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중개연구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의학 정책연구와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활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학 임상연구 설계/수행/분석 지원
2. 신약 개발 IND 지원
3. 기초 임상 간 협연연구소 역할 수행 (중개연구)
4. 임상연구 수행 인력 교육
5.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Database 구축 지원
6.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등 세계화 추진
8.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
9. 축적된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토대로 한의약 정책 연구 개발
10.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연구 활동과 연구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평가·자문위원회 : 연구소 내·외의 각종 사업의 기획, 수행,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의 각종 자문에 대해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 각 항에서 정한다.
3. 임상인력 교육실 : 임상의, 연구간호사, 임상약사, 통계인력 등의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4. 임상연구 계획실 : 연구소 내·외의 각종 임상연구에 대한 대상, 개입, 대조, 평가방법 및 임상디자인에 대해 계획서와 중례기록서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자료관리실 : 연구소 내·외의 모든 연구에 대한 자료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6. 연구지원팀 : 연구소의 모든 연구행정을 지원한다.
②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실장은 본 연구소의 구성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장 및 실원은 업무능력을 갖춘 연구소 외부의 교수와 전문가로도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자문위원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연구소장)

-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연구, 학술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구소장은 현직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장)

- ① 자문위원장은 한의학안전성유효성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② 자문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 ①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본교 「부설연구소(원)설립과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 항의 연구원은 한의학 안전성 유효성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보조원)

- ①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한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행정요원)

-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임명한다.
- ② 행정요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둈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연구소장, 자문위원장, 연구원, 각 실장 등의 임명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각 실장의 당연직 위원과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명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수입

제14조(회계)

-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 ②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